
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2017. 3. 27.

1. 근거 규정
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제 2 항

2. 공시 내용

- 당사는 아래와 같이 ‘이사회 의장’과 ‘선임사외이사’를 선임함

구 분	성 명	직 위	임 기
이사회 의장	여승주	대표이사	2017 년 3 월 24 일 ~ FY17 정기주주총회일 (1 년)
선임사외이사	정규상	사외이사	

3.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- 이사회 진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

4. 이사회 결의일(선임일): 2017 년 3 월 24 일

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